

제 9 차
월례토론회
도시빈민연구소
1990.6.30.

탁아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빈민연구소(701-900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792-7767)

***** 차례 *****

1부. 탁아운동의 현황

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현황	----- 3
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결성배경	----- 3
2)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위상과 역할	----- 4
3) 조직 형태	----- 4
4) 주요 활동 내용	----- 5
2. 지금의 탁아입법 투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7
1) 들어가면서	----- 7
2) 탁아입법 투쟁의 전개 과정	----- 7
3) 탁아입법 투쟁의 과제	----- 9

2부. 탁아운동이란 무엇인가?

1. 한국사회와 여성문제	-----10
1) (한국) 자본주의와 여성문제	-----10
2) 육아의 사회화	-----11
2. 탁아운동이란 무엇인가?	-----13
1) 개념	-----13
2) 주체	-----14
3) 전개과정	-----14
3. 탁아운동의 조직적 전망	-----19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
-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1부. 탁아운동의 현황

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현황

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결성 배경

탁아소의 필요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두된 것은 최근 여성노동력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로 인한 자녀양육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공동육아의 과제 속에서 탁아운동은 시작되었다. 특히 경제구조적인 빈곤의 모순 속에서 발생한 기층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 문제는 그 절박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민간 비영리 지역사회 탁아소가 설립되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이라 함)는 1985년 9월 '지역사회 아동교사회'로 발족되었다. 서울, 성남, 인천 등지에서 1980년대 초부터 탁아소를 운영해 온 운영자, 실무자들이 한데 모여 그동안 개별 고립 분산적 활동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올바른 탁아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초기에는 몇곳 되지않는 6-7명의 탁아 활동가들이 월1회 정도 모여 탁아소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지역운동 안에서 탁아운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주된 것이었다. 또한 아동교육에 대한 공동논의와 전체 민주화운동 속에서 탁아운동의 역할등을 분과토론, 지역별 모임등을 통하여 거듭 발전해왔다.

그 결과 개별 탁아소사업이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전체 민주화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탁아운동으로서 확고히 자리잡아 왔다. 한편 탁아 교사들은 활동가로서의 그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1987년 6월 연합회 역할의 증대에 따라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로 명실상부하게 자리잡았다. 그 이래 현재는 전국 100여곳의 회원 탁아

소들이 즐기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지탁연의 위상과 역할

일차적으로 기혼여성노동자의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를 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본 연합회의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탁아운동의 역할이 지역운동, 아동교육운동, 여성운동 등 3가지 과제를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할 때 이 중 기혼여성들의 조직화 운동을 주된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즉 탁아문제는 탁아활동가의 문제가 아닌 전 대중운동적 차원에서 여성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한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기혼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정당성을 갖고 보다 더 주체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그간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 속에서 왜곡되고 무시되어 온 탁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쳐나가는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의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재평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보다 올바른 제도적 보장 속에서 가능하도록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위한 활동'과 관주도의 획일화와 파행적인 (이운추구)탁아정책을 비판,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탁아소의 역할과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해 나갈 것이다.

3. 조직형태

- 1) 총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 2) 실행위원회; 회장단, 지역위원회 대표,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목적을 올바르게 전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 3) 지역위원회; 전국의 개별 탁아소들은 각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어 교육, 선전, 홍보,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서울(동부, 중부, 북부, 봉천, 구로), 안산, 안양, 부천, 성남,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군산, 마산, 원주 등에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4) 사무국; 교육, 조직활동, 문화, 홍보 활동, 상담활동을 중심으로 실행 위원회에서 합의된 논의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다.

4. 주요 활동 내용

(1) 교육활동

탁아교사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탁아활동에 기본이 되는 아동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아동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가정의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탁아활동을 질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가) 신진교사교육; 새롭게 탁아소를 통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인자를 교육. 지금까지 1, 2, 3기 교육을 마치고 현재 4기 교육강좌가 진행 중에 있다.
(교육기간 주3회, 5개월간)

- 나) 현장교사 재교육; 탁아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중심으로 일차 지역위와 연합회 차원으로 월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름, 겨울 수련대회를 축으로 전국의 탁아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본이 되는 탁아운동론을 정립, 합의해내고 활동가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 다) 자원활동가교육; 본 연합회에 소속된 탁아소에서 자원활동을 원하는 대학생, 일반인을 위한 교육으로 1차적으로 개별 탁아소 교사들의 교육과 보다 조직적인 규모의 자원활동가 교육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각 대학 총학생회내에 탁아분과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문화, 홍보 활동

탁아운동에 대한 선전 홍보활동으로 일반대중에게 탁아문제를 보다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현재의 비영리 민간 지역사회탁아소 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달하고, 탁아소내 아동과 저모대중을 위한 공동체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 화보: '우리네 아이들' 1 - 7호 발간
- 탁아운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집 발간
- 교육과 홍보를 위한 각종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노래 테이프 제작 판매.
- 올바른 아동 노래 문화보급을 위한 노래공연 - '새날을 열어갈 우리 아이들'
-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어머니 큰 잔치' - 88, 89년도에 800여명의 참석으로 기혼여성노동자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여성으로,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독교민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공동 주관)
-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공동행사로 주민잔치, 공동 소풍, 공동 운동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3) 상담 활동

탁아소 활동 전반에 대한 상담과 탁아법에 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다.

(4) 연구 조사 활동

탁아소 실태 조사를 통한 연구와 지역사회 탁아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 현재는 탁아제도에 따른 여러가지 민간탁아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 연대 활동

빈민, 공단 지역의 제반 문제를 사안별로 연대하여 활동 해왔고, 현재는 그러한 활동과 함께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6) 기타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지금의 탁아입법투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들어가면서

지난 6월 11일 민자당에서는 기만적인 영유아보육법안을 내놓고 그 제안 설명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82년 이래 정부의 정책 부재나 다름없었던 탁아문제에 대한 뒤늦은 참여는 무엇보다 현 정권의 지배전략의 하나인 시혜적 개량조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민자당은 이를 통해 그동안 방기나 다름없었던 탁아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탁아문제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그의 주된 기조는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철저한 획일화 및 통제로 민간 자율 부분의 배제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유린한 3당야합 이후 정권 위기에 따른 만회 '제스처'로 지배전략의 구도 속에서 들고 나온 정책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를 통하여 사이비 복지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민중생존권을 보장할 탁아법이 제정되도록 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 탁아입법 투쟁의 전개과정

지난 88년 9월 '88탁아소'의 등장과 이후 89년 9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정부의 탁아정책은 그럴듯하게 시작되었다. 그동안 빈민, 공단 지역 등에서 지역사회 탁아소 활동을 전개해 왔던 탁아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활동에 적지않은 위기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탁아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자적인 입장에 서기보다는 방어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그동안 탁아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한 깊은 논의의 부재와 함께

일상적인 활동에 급급했던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방어 단계에서의 전환점은 89년 5월 비상총회를 통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면 거부와 종합적이고 민중지향적인 탁아법 제정을 추진하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그후 탁아입법안을 만들어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탁아정책의 기반성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탁아활동가들에게는 탁아입법의 실질적 당사자인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탁아입법 쟁취투쟁을 벌여 나가도록 좁게는 현 자모대중을 추동하고 더 나아가 탁아문제에 이해가 걸린 미조직 대중을 거당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한편 탁아입법의 국회 청원 활동과 새 민민권 단체들과 공동대위를 구성하여 공청회등을 통하여 기층민중의 생존권 차원의 탁아문제로 부각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탁아활동가들로 하여금 탁아입법투쟁의 의의와 과제를 전체 민민운동 속에서 분명하게 자리잡도록 탁아입법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선전, 홍보하여 탁아문제가 단순한 법 추진 차원만이 아닌 모성보호 쟁취와 육아의 사회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 탁아소 자모 대중에 대한 교육과 행사를 통하여 탁아법 쟁취 투쟁의 의의를 바로 인식하고 현 탁아소 인정 및 신설 요구와 함께 탁아법 제정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의 활동을 토대로 한 실질적 성과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내용이 개량적으로나마 변화되어 직접적인 탄압의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게 되었다. 한편 탁아입법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으로 탁아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민민권의 관심을 유도시켜 탁아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개별 단체의 활동 중 실천내용으로서 탁아입법 투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였다.

국회활동은 그 한계가 분명하였으나 탁아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정치권에 이를 당면 과제로 부각시켰고 지역사회탁아소의 실체와 그 정당성을 널리 선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속에서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이 나온 것으로 그동안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그 어느 것도 변화한 것 없이 부서의 일원회를 통한 종합입법이라 내세워 더한층 개악된 파행적 탁아정책을 유도하는 규제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탁아입법투쟁의 과제

당면한 탁아입법 쟁취투쟁은 탁아운동의 긍정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탁아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육아의 사회화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장기적 목표의 중요한 고리로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첫째, 입법투쟁 자체는 제도권내 투쟁일 수 있으나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단순 법안 통과만이 아닌 투쟁과정을 통하여 현 정권의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을 폭로 선전하고 둘째, 반민자당 전선의 대열에 선 동조세력의 확보와 대외적으로 탁아운동의 정당성을 선전함으로써 대중적 확산을 꾀하고 셋째, 육아의 사회화라는 단일한 목적을 토대로 자모 대중을 조직화, 의식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이상의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 연합회 활동만으로는 그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탁아문제를 전 민민권의 과제로 삼아 민중생존권 차원의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역내 제반 민주단체와의 연대가 공고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만적인 탁아법 통과로 야기되는 파행적이고도 관주도 획일화 정책으로 인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견인, 비판할 수 있는 민간 탁아소의 활성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부. 탁아운동이란 무엇인가?

1. 한국사회와 여성문제

탁아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속에서 (기층)여성
이 처해있는 상황과, 제반 모순에 대한 선결적 이해가 요구된다.

1. (한국)자본주의와 여성문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문제의 본질은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설명된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자본과 노동간의 생산
관계이며 이러한 계급관계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일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녀관계 역시 지배-피지배 관계의 유지 강화를 위해 불평등한
관계로 변형되며, 이는 자본주의가 차별과 분리 기제를 통해 자본축적
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고착시켜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 가족 전체의 재생산 비용 부분까지 포함되어 지불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1인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만을 지급하는
* 노동력 가치 분할 을 꾀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한국 자본주의에서는 제국주의 독점자본 및 국내매판독점자본에
의한 파행성 속에서 광범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강도높은 착취가 나타
난다. 바로 이 파행성은 자본의 일반적 속성과 더불어 '잉여가치의 해외

*주) 노동력의 가치분할 : 남성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임금속에는 3-4
인의 부양가족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데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아 여성은 취업하게 되며 여성노동력을 이용한 자본은 정당
한 임금을 남성과 여성의 것으로 분할시켜 놓음으로써 한 사
람의 임금으로 3-4인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유출'이라는 식민지적 조건 속에서 자기 확대 재생산을 확보하려는 한국
자본의 특수한 성격에서 「노동자 일반에 대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구조
화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자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노동력 재생
산의 항상적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노동은 자본의 성차별로 말미암아 더욱 열악한 조
건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된다. 더우기 자본은 모성보호에 드는 비용을
전혀 쓰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오히려 퇴직
을 강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육아의 부담이 떨어진 양질의 기혼여성 노동력을 생
계보조적 위치의 임금, 즉 남성 및 미혼여성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임금으로 다시 흡인한다. 이때 기혼여성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과 함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받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게되는데 이
러한 점들이 우리나라 기혼여성 노동자가 겪게 되는 고통이다.

따라서 「한국여성운동의 과제는 착취 당하는 노동계급으로서 계급적,
민족적 모순과 함께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모순을 통일
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제기된다.

한편 한국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봉건적 유제, 가부장적 이데올로
기는 여성의 질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즉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가사
일은 절대적인 여성의 일로 규정되며 지배계급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착취구조를 정당화,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타파해야 할 임무 또한 여성운동의 주요과제라 하겠다.

2. 육아의 사회화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수한 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여성운동의 하나
의 과제로서 육아의 사회화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1) 노동계급 일반에 대한 구조적 저임금 상태는 노동자 가족의 재생
산 위기를 항상적으로 강요하며 이에 대응하는 소득 극대화 전략으로

서 다가구 취업 즉 여성취업을 불가피하게 한다. 그 결과 여성은 가구 소득을 늘리기 위해 취업할 것을 강요받게 되고 이때 그 전제 조건으로서 육아의 사회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육아의 사회화는 국가에 대한 재분배론적, 생존권적 요구가 된다.

2) 한국사회여성들은 모성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언젠가는 일자리를 그만 두어야 할' 임시 노동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평생노동을 전제하는 노동자의식으로 나아가는 데 저지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혼 여성이 노동자가 되더라도 '가족 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해 일한다'는 의식을 강요받으면서 정당한 권리 주장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올바른 의식을 지닐 수 없게 된다.

3) 인간은 공동체적인 집단 속에서 다양한 경험 습득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격이 형성되며 올바른 생활 습관, 문화 등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집단 양육은 핵가족 사회에서 개인적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육아의 문제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의를 갖는다.

육아의 사회화라는 과제는 이처럼 자본주의 모순 특히 파행적인 한국자본주의 구조에서 심화된 노동력 착취에 의해 규정받는다. 그러므로 육아의 사회화 실현을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목적의식적, 집단적 노력은 민족-계급-계층 모순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관점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육아의 문제를 사회화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그것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자발적 민간탁아소의 설치였고, 그 연장선에서 탁아운동이 제기되는 것이다.

2. 탁아운동이란 무엇인가

1. 개념

육아문제의 본질은 여성이 생리적 특성으로 출산, 육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본가들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 노동력을 억압, 착취하는 데서 기인한다. 한국사회에서 육아의 문제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소위 가정의 돈벌이 만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하여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지어진 기혼여성노동자가 가사노동의 몫을 그대로 안은 채 불가불 취업전선에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과 자본이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가계 보조적'이란 핑계를 들어 사회적 노동에서의 여성노동을 극도의 저임금 집단으로 묶어둠으로써 소위 육아의 문제를 개별적 차원(파출부, 대리양육인)에서의 해결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 산업화를 통해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화 됨에 따라 부모의 취업은 곧바로 자녀의 방치상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육아문제는 여성의 고용증진과 핵가족화가 빈곤의 문제와 맞물려 해명, 용철 남매의 질식사 사건에서 보여 주듯이 어린 자녀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자녀는 개별가족의 소유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갈 책임을 진 중요한 사회전체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육아에 대한 책임은 전체사회의 책임임이 명백하다. 특히 노동자 계급의 자녀가 부모의 빈곤을 아무런 보호나 여과 없이 넘겨받음으로써 올바른 양육의 기회를 박탈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이의 해결은 지연되거나 방기될 수 없는 급박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육아의 해결이 사회화 과정, 즉 탁아소 설치 및 올바른 탁아제도의 정착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때 탁아운동은 여성노동자가 안고 있는

제 과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될 육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몇몇 개인이나 혹은 자선단체들에 의해 부분적, 시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집단에 의해 대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운동이다.

탁아운동이 기층 여성의 제 문제 중 육아문제를 보다 전문화하여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이며 육아문제의 본질이 자본의 이해와 맞물려 있으므로 그의 전면적 해결은 역시 현 사회 구조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체 변혁운동과 통일되어 있다. 따라서 탁아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과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탁아운동을 통해 축적된 역량은 전체 변혁운동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2. 주 체

육아가 현상적으로 전체 여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육아문제의 본질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육아문제는 여성을 차별화하여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데 있다. 즉 육아를 개별가정의 가사노동의 몫으로 규정하여 결국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온존시키려는 고도로 은폐된 자본의 의도라는 점에서 육아문제의 해결은 양성의 대립해소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 계급의 착취를 거부해 나가려는 여성노동자 운동의 일과제이며 나아가 노동운동의 과제에 복무하는 것이다. 따라서 탁아운동의 주체는 명확히 여성노동자=기층여성이다.

3. 전 개 과 정

육아의 사회화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전개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1) 영역별 전개

탁아운동의 제요구는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 전반을 걸쳐 나타날 수 있다. 생산현장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조직된 여성노동자(민주노조 내 여성부)들이 직장탁아소 확보 및 운영권 쟁취투쟁이 노동현장내에

나타나는 제반 성차별문제(사회적 노동에서의 평등권 요구, 모성보호 요구)와 결합한 운동으로서 탁아소를 노조에서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기업주로부터 파내는 운동을 벌려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탁아운동을 통해 고양된 역량은 결국 현장의 강화, 노동운동의 강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재생산 영역, 지역탁아소의 경우 초기에는 자발적인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지만 이후 모여진 이해집단, 자모회를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탁아소 설치 요구, 예산확보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탁아정책 요구 및 정책 개선의 요구 등 대정부 요구투쟁의 단계에서는 양영역에 걸쳐 보다 결집된 힘으로서의 공동투쟁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2) 내용별 전개(단계별)

탁아운동의 초기적 단계에서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탁아소 설치운동을 개인적, 단체별로 전개해 나간다. 탁아소의 설치가 확산되어 갈 때 이는 탁아정책 요구, 재정확보 등의 요구투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탁아소 설치 요구, 정책요구가 무원칙적 양적 팽창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없다. 즉 육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파행성(상업화)은 여성노동자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해야 하고 최저생계비를 넘나드는 저임금으로는 8시간의 탁아시간이나 임금과 맞먹는 보육료를 감당할 탁아소란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육아의 사회화 과정의 파행성은 금번 민자당의 탁아법*·영유아 보육법' 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자본

* 주 : 민자당 영유아 보육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지난 90년 6월 11일 민자당의 신영순 의원은 가칭 영유아보육법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영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1)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가진 문제점을 과감히 개정하여 탁아입법을 마련하겠다고 2)정책수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 논리에 넘겨 줌으로써 실제로는 여성노동자의 이해를 완전히 사상한 채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탁아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의 탁아법이 소위 자생적으로 나타난 민간탁아소를 규제하고 분쇄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표출된 이상 급변 탁아입법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고 나타날 수 밖에 없다.

ㄱ. 여성노동자의 탁아소 설치 요구는 무원칙한 양적 확산이 아니라 생존권적 요구와 맞물려 있으므로 정책 내용의 민중성을 담보해야 한다.

ㄴ. 탁아정책이 국가의 육아문제의 해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간 탁아운동의 주도적 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 명백함으로 이의 저지 투쟁을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의료부조대상자를 포함하는 저소득층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중소득층의 요구를 수렴하겠다 3)비영리소규모 민간시설탁아소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 4)현재 다기화된 주무관청정부서의 난맥을 통합.조정하겠다 5)탁아문제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법안시안도 없이 제안설명에 그치는 편법을 썼으며 토론자들에게 배부된 영유아보육법 시안은 제안설명과 상반된 내용이었다.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영유아보육법시안의 문제점은 1)시행령의 문제점을-국무회의에서 제정.변경이 가능한 점-개정하겠다고 하면서 전문 34개 조항 중 20개 조항을 다시 보사부령,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의 독주가 우려되며 2)영유아보육위원회, 영유아보육지도원, 영유아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안 등 통제기구가 너무 많아 예산의 낭비 및 지나친 통제가 우려되며 3)민간비영리탁아소를 지원하겠다는 면서도 경과조치에 조차 그 입지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4)지원 대상 역시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서 국가의무규정이 약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서 탁아소의 상업화가 우려된다.

ㄷ. 탁아운동은 결국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므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표출해 나가야 한다는 것

탁아소의 양적확산과 더불어 탁아정책이 펼쳐진다는 함은 곧이어 확일화, 관료화된 보육내용, 특히 자발적 탁아운동을 전개할 통제수단이 강화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탁아소의 역할이 어린 자녀에 대해 주입되는 잘못 왜곡된 보육내용에 대한 견제 즉 보육내용의 민주화 운동이 지금의 참교육 운동과 맞물려 나아갈 수 있겠으며 특히 탁아교사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의 부족에서 조장된 저임금.고용조건 열악 상태등은 교사들로 하여금 노동조건 개선 운동에 나서게 할 것이다.

탁아운동의 전개과정은 국가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복지정책의 퇴조시 그대로 반영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견제.저항운동 또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빈곤한 보육정책에서 올바른 양육이 불가능함으로 (지자체를 상징하면서) 주민의 제반 요구와 결합한 형태로 정치적 요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3) 한국사회에서 탁아운동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경우, 객관적 조건에 있어서 생산적 여성노동자가 조직의 힘과 자발적 의지를 담보하고 있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탄압이 극심한 현실이어서 여성노동자의 제반 특수한 이해를-탁아문제를 포함하여- 표출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사업주가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직장내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여 여성노동력의 장시간 노동을 확보하려는 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탁아운동은 지역적 차원으로의 전개가 유력한데 그 근거가 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ㄱ. 탁아요구를 수렴한 개인,단체들에 의해 80년대 이래 빈민,공단지역 내에 자생적으로 민간사회 탁아소 설치하고 자모조직을 꾸려 왔다는 점

ㄴ. 기혼 여성 노동력의 상당수가 소규모 미조직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

ㄷ. 출.퇴근, 가정내의 협조 등을 이유로 지역탁아 선호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

따라서 지역탁아의 운동적 과제는 탁아운동이 당면한 자기의 고유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육아의 사회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체변혁운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해집단을 어떻게 묶어 세워 어떤 내용으로 싸워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방향이 찾아질 것이다. 또한 탁아운동을 통해 구축된 역량은 전체운동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탁아소의 조직적 전망 역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3. 탁아운동의 조직적 전망

개별탁아소 자모조직은 같은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는 동질감과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탁아운동의 대중조직으로서 기초단위를 이룬다. 여기서는 탁아문제나 제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탁아소 운영에서 시작하여 여러가지 자치운영의 경험을 통해 민주적, 자주적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와 함께 아이를 맡기게 되는 기간이 한사적이라는 점과 개별자모조직이 가지는 역량에서, 그리고 의식화의 내용이 실천적으로 전개되어 나가기에는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졸업생 자모조직이나 기타 2차 기초조직(취미반, 부업반...)을 꾸릴 수 있으며 지역내 다른 조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현단계 탁아운동(탁아입법투쟁) 속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자모연합(지역 공동자모회)을 형성하여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실천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구로, 봉천, 성남, 인천 등 각 지역에서 2-8개까지의 탁아소 자모조직들이 지역별 공동자모회를 꾸리면서 선진적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별 자모연합은 개별 자모조직간의 다양한 교류(체육대회, 교육 등)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이러한 밀접한 관계속에서 여성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천력을 담보해 나가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현 탁아운동의 당면과제인 민간 탁아소의 합법성 확보 그리고 나아가 민중적 탁아법 쟁취투쟁의 주체로서 선전, 홍보, 교육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만약 탁아정책에 대한 기만적, 허구적 악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민간 탁아소들이 탄압받게 될 경우라도 이를 통해 자모대중들을 실천적 대열에 이끌어 내어 조직력을 강화하고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탁아운동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재정 지원의 확충, 보육내용 민주화, 탁아소 유지 운동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전개될 이후 탁아운동에서는 그 주체역량 구성에서 더욱 광범하고, 의식적인 대오로의 질적 변화, 발전이 요구 될 것이다.

그러나 탁아법 쟁취투쟁은 자모대중들의 의식화, 조직화의 계기이지 종국적 귀결점은 아니다.

특히 자모조직이(개별, 지역자모연합) 어느 정도 한시적 관계(아이가 탁아소에 있는 동안)라고 볼 때 의식화된 역량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지역적 전망이란 '노동계급이 밀집한 주거지에서 자주적 주민역량으로 건설되는 조직'에 대한 목적의식적 결합을 의미한다.

그것은 첫째, 탁아 자모들이 '일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생계유지에 늘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공단, 빈민지역의 주민으로서 처해지는 생산과 재생산의 총체적 모순구조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지향하는 의식화, 조직화를 필연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주어진다. 둘째, '육아의 사회화'가 량과 질의 양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장기적 전망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층민중의 주거지역 단위에서의 자주적, 자치적 역량이 비상이 강화될 때 탁아운동의 동력이 완결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이 육아의 사회화라는 탁아운동의 고유영역을 방기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주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요구로 발전되는 것이다.

이때 탁아소 역량과 자주적 주민조직이 상호 결합하는 경로로서는
1) 자모조직 중에서 선진자모대중이 주민조직의 지도적 대중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때 단위 자모회는 주민조직과 종속적 관계가 아닌 고유 영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기적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
2) 지역주민조직을 포진된 역량간의 협의적 틀로서 구성할 경우 탁아활동가는 다른 조직의 활동가들과 함께 탁아운동의 특수한 자기 내용을 가지고 결합하여 논의와 실천, 검증을 공유해 나가게 된다.

현실적으로 이 협의적 틀은 단위 지역의 활동가 체계로서 위상과 임

무를 지닐 것이며, 탁아운동은 자기 내용성을 이 체계 속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외에도 자주적 주민조직의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결합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탁아소 자체의 역량은 물론이고 지역의 전반적 조건(물적, 인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 요구가 확대되고 실천적 당면과제로 주어질 때 지역자모연합은 그 동안의 의식화, 조직화의 기반을 토대로 "전국탁아소자모연합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특히 현재적 조건속에서 파행적 탁아법이 통과되어 민간탁아소가 위기에 놓였을 때 "전국자모연합"의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 조직은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가능한 조직이며 각 지역의 다양한 조건, 자모조직의 의식화 정도, 내용성의 확보 등 다양한 특수성에 의해 지속적 조직력이나 역량의 담보는 어려울 것이다.

탁아운동의 조직적 전망을 바라볼 때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은 지역자모연합이 될 것이며, 이 지역자모연합은 어느정도 동일한 지역적 성격과 인접성등의 조건과 맞물려 활발한 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지역자모연합에서 의식화, 조직화된 자모조직의 역량이 지역내로 투입되어 '자주적 주민조직' 건설에 참여함은 지역운동의 발전에 밝은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

1) 법형식의 문제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의 문제는 곧바로 생존권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편의적으로 제정, 변경할 수 있는 시행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개정, 변경토록하는 '의회입법주의'에 반한다. 또한 탁아문제는 아동의 문제, 여성노동자의 문제, 저소득층의 문제를 포괄하는 복지개념으로서 아동복지법이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의 문제와는 별도의 규정이 요구된다.

2) 예산확보의 문제

보사부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43%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복지에 예산은 아주 낮다. 90년 정부의 기조정책이 복지사회건설에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바뀔에 따라 탁아예산도 원래 700억정도 계상하였으나 계수조정과정에서 191억으로 삭감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여하에 따라 복지에 관한 예산은 뒤로 밀리고 삭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탁아사업은 현재 시설의 수요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지원 등 앞으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는 입법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시설구분의 비합리성

현재의 탁아시설과 보사부가 향후 추진하겠다는 탁아사업 계획으로는 전면적인 탁아복지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국,공립 탁아와 민간탁아가 공존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아동 30명이상 보육하는 시설은 '시설탁아'로, 20명이하 보육하는 시설은 '가정탁아'로 함으로써 20명-30명이하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민간탁아 시설의 근거가 없다.

*주: 90년 7월 현재, 탁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89년 탁아입법공동대책위원회의 압력에 의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에서 몇가지 손질하여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역시 위에서 밝히는 바와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민간탁아소에 대한 재정지원 미비

시행령에 따르면 3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탁아에만 지원규정이 있고 시설탁아의 운영주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빈민,공단지역에서는 시설탁아를 할만한 공간마련(부지 78평 이상)도 어렵고, 법인허가를 받는데 따르는 까다로운 요건마련 및 법인세 등 비용부담도 적지않아,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빈민,공단지역의 비영리탁아소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최근에는 가정탁아 시설에도 지원하겠다고 17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으나, 가정탁아는 20명 이하의 보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30명을 보육하고 있다가 가정탁아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 10명을 내보낸 경우도 있다.

5) 지원대상의 문제

가. 협소성: 시행령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국,공립탁아소 우선입소 및 보육료 감면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대상자의 기준이 월소득 7만원 이하로서(원래 4만 6천원, 5만 4천원이었는데 탁아입법 추진과정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 비현실적인 기준에다 실제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탁아대상 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생활보호대상자 3500명 표본조사 결과 0.5%만 탁아대상임) 복지정책의 목적이 국민의 자립구조를 돕고 분배정의 실현하는 것이라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가정의 파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실제 탁아소 이용 부모의 월소득은 40-50만원에 불안정 고용, 전월세의 주거상황일 때가 많다.)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지원대상의 확대를 통한 복지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

나. 운용의 자의성: 우선입소 순위 및 보육료 감면 대상자 중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라는 기준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구청간의 갈라먹기, 통반장에 대한 회유수단, 선거시 악용 등 운영상 자의성이 농후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6) 주무부서의 일원화

현재 새마을유아원 중 탁아시설은 보사부, 88시립탁아소는 서울시에
서 90년도부터 보사부로 이관, 직장탁아는 노동부, 농번기탁아는 농촌
진흥청 소관으로 나뉘어져 일관성 및 추진력이 부족하다.

7) 직장탁아, 농촌탁아에 대한 방기

직장탁아는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확보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발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탁아는 벌칙조항 등 강제규정이 없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규정으로 남기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여성노
동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부터 직장탁아소 설립을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여성노동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기혼 여성노동자는 소규모 하청업체에 취업률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다분히 전시행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촌에서도 농번기가 따로
없고 수로에 빠져 죽는 등 방치아동의 문제가 심각하다. 1년 중 2개
월 운영에 불과한 농번기탁아소는 그나마도 10만원의 미미한 보조로
인해 농민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탁아소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활성
화 방안이나 대안은 언급조차 없다.

*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비 고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모들의 생계 또는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인한 아동들의 방치 상태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아동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교육함으로써, 아동들을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자라게 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라함은 만 1개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의 아동을 말한다. 2. '유아'라함은 만 24개월부터 국민학교에 들어기 기전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3. '탁아소'라함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 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탁아사'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탁아 시설에서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사'라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탁아시 설에서 영아들을 보육하는 자를 말한다. 6. '보호원'이라 함은 탁아사나 보육사를 도와 탁 아시설에서 유아나 영아들을 보육하는 자를 말한다. 7. '취사원'이라함은 탁아시설에서 아동들의 식 사및 간식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영리'라 함은 탁아소 운영에 있어 보육료 외 총합이 운영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탁아소의 종류) 탁아소의 종류는 다음과 호와 같다. 1. 국·공립탁아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한 지역에서 일정한 시설을 구비하고 운영하는 탁 아소를 말한다. 2. 민간탁아소 :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나 사회단 체, 개인이 일정한 지역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를 말 한다. 3. 직장탁아소 : 직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본 법에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 하고자 노력함 - 1.탁아소의 전반적인 확산을 꾀하고, 2. 민간탁아 중심의 다양한 교육이 되도록 하고, 3. 본배정의 에 입각한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명시했고, 4.탁아소를 지 원,육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규제입법을 지양하도록 하 였다. * 저소득층 : 절대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 에 그기준을 두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을 보다 현실 화는 과제가 이법을 시행할 때는 올바른 탁아지원선 으로 확립 되어야 한다. 여기서 영아를 만 1개월이라 한것은 사회,경제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모성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미혼모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어 1개월 이 전의 탁아도 가능토록 하여야 함. 외견 : 탁아사,보육사로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 대만의 경우 분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내용에 있어 중점을 두어 보오 교육할 부분의 차이가 있다.

*주: 탁아입법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만든 법으로 국회에 상정할 법률안.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비 고
직장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탁아소를 말한다.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법에 정한 규정이 다른 법률과抵触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국.공립 탁아소 제 5 조 (설립)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탁아소가 필요한 지역에 국.공립 탁아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국.공립 탁아소는 도시빈민지역,공단지역,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3) 기타 국.공립탁아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시설기준) (1) 국.공립탁아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놀이방 : 영.유아 1인당 각 0.8평 2. 놀이마당 : 영.유아 1인당 각 0.8평 단,부근에 있는 놀이터로 놀이마당에 대체할 수 있다. 3. 화장실 4. 급수 및 세면시설 5. 취사실 6. 취침실 7. 소방기구 8. 구급의료 기구 (2) 국.공립탁아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1. 유아 16인당 : 탁아사 1인,보조원 1인, 취사원 1인(유아 8인이 초과 할 때마다 2. 영아 6인당 :보육사 1인,보조원 1인 취사원 1인(영아 3인이 초과 할 때 증가) 3. 간호사 : 영아 30인당 1인,유아 50인당 1인 단,가까운 초아과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하여 대신 할 수 있다.	* 시설 기준을 높이 올바른 탁아소 모델을 제시 할수 있도록 하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비 고
제 7조 (탁아소 종사자의 자격 기준) (1) 탁아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격중 하나를 구비한 자여야 한다. 1. 유치원 교사자격이 있는자 2. 대학교,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한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2) 보육사는 다음에 열거한 자격중 하나를 구비한 자여야 한다. 1. 대학교,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한 자 2. 대학교,전문대학의 의과계열 또는 간호계열을 졸업한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로서 탁아기관,의료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한자 (3) 농어촌 등 벽지지역에서 위의 자격을 갖춘 탁아사 및 보육사를 구하지 못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로 탁아사 및 보육사를 대신할 수 있다. (4) 국.공립탁아소에 종사하는 자의 임금기준및 기타 처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조 (비용부담) (1) 탁아소의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등 기본운영비는 생활보호법 제 36조 제1항 제 4호 규정에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비에서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제 9 조 (위탁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탁아소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또는 사회단체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운영자가 탁아소 운영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나 영리도모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조 (보육시간) 지역탁아소의 보육시간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노동시간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부	* 탁아사나 보육사는 관련학과 전공자나 교사자격자를 불문하고 탁아관련 교육을 이수 해야 한다. - 이는 탁아교육은 인 지교육만이 아닌 영양,건강,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자격이나 관련학과 전공만으로 현실적인 탁아 서비스가 불가능 하기때문이다. 탁아는 유치원교육과 내용상으로 다르고 이미지를 대신할 수 있는 애정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개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할 경우 - 부정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그러나 개인재산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보다 깊이 재고해 보아야 한다.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비 고
아동에 대하여 탁아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 (1) 국·공립탁아소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국·가유공자, 심신장애자, 모자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2) 저소득층아동의 보육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탁아소가 없어 부득이 민간 탁아소를 이용하는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전향의 가면비율에 의하여 대신 납부한다.	*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 요함 - 그기준은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때 그 기준이 복지개념에 맞는 현실화되고 대상이 대폭 확대 되어야 한다. * 보육료에 대해서는 이후 보육료 차등제 도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보험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는 재산추적이 불가능함에 따라 현재 실시중인 의료보험과 같은 폐단이 있을 수 있다. * 민간 탁아소를 비영리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복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다. 이법에서 굳이 비영리를 명시한것은 사업주의 추구가 아닌 만큼 재정지원을 보다 공고히 하고 규제법이 되어 탁아소의 확산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제 3 장 민간 탁아소 제12조 (설립) (1)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개인은 비영리 사업으로 지역탁아소를 설립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공동주택단지내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 시설을 갖춘 탁아소를 설립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수탁설립 의무) 다음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탁하는 탁아사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1.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2.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 3. 기타 탁아보육에 적당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4조 (시설기준) 민간탁아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30명 이상의 아동을 수탁하는 대규모 민간탁아소는 이 법 제 6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놀이방 : 영, 유아 1인당 각 0.8평 2. 화장실 3. 급수및 세면시설 4. 취사실 5. 소방기구 6. 구급의료기구 제 15 조 (탁아소 설립 신고및 인가) 민간탁아소의 설립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명 이상의 아동을 수탁하는 민간탁아소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비 고
외 경우 이 법 제 6조에서 정하는 시설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비용의 보조) 민간탁아소가 저소득층 아동을 일정비율 이상 보육하는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탁아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17 조 (준규정) 제 7조의 규정은 민간탁아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직장 탁아소 제18조 (직장탁아소) (1) 상시 3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주는 직장탁아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두개이상외 사업장에서의 노동자가 합하여 300명 이상이 되어 각 사업장의 노동자대표들이 탁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각 사업장의 사용주는 탁아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비용분담율에 따라 직장탁아소를 설립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운영) 직장탁아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0 조 (시설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탁아소를 설립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탁아소 설립 비용의 용자 또는 시설비, 운영비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21조 (준규정) 제 7조, 제14조의 규정은 직장탁아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교사, 은행, 병원등의 직장탁아에 대한 대안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 300명이상은 대기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그 수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여기서 상시 노동자로 남여, 기미혼의 구분을 두지 않았음. * 노사합의에 의해 보육수당 지급방법을 모색 수 있다. - 법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움. * 지역탁아소 활성화 방안에 반한다는 의견으로 지역탁아 지향하는 공동체 이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탁아소가 전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현재 요구자나 그를 실행에 옮길 대상이 분명하고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현재 그 확보가 수월하다는 잇점이 있다. * 지원과 벌칙의 상용조항으로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 5 장 탁아운영위원회 제 22조 (탁아운영위원회) (1) 탁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산하에 중앙탁아운영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별 탁아운영위원회를 둔다. (2) 각 지역별 탁아운영위원은 15인 내지 25인, 중앙 탁아운영위원은 15인 내지 20인, 으로 정하며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비 고
(3) 지역별 탁아운영위원회 위원은 탁아소 운영 경험이 있거나 탁아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각 탁아소의 추천을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며, 중앙탁아위원회는 지역별 탁아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 탁아 위원은 지역별 탁아위원을 겸할 수 있다. (4) 각 탁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탁아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23조 (탁아운영위원회의 임무) (1) 각 지역별 탁아운영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탁아소의 시설 구비 여부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각 지역탁아운영위원회는 민간탁아소가 비영리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보조받는 경우 그 사용내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 각 지역별 탁아운영위원회는 두개이상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직장탁아소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 두 사업장간의 거리등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그 경우 두 사업장의 탁아대상 아동수 및 그에 따른 설치비용 부담율을 결정하여 각 사업장의 사용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각 지역별 탁아운영위원회는 각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직장탁아소의 시설구비 여부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5) 중앙 탁아운영위원회는 각 지역별 탁아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탁아문제에 관한 연구 조사를 병행한다. (6) 각 탁아운영위원회는 지도, 감독, 조사활동 사항을 보건사회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7) 기타 탁아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벌 칙 제24조 (벌칙) 정당한 이유없이 이법 제 12조 제 2항에 위배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자와 제 17조 제 1항, 제2항에 위배한 사용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탁아소 설립을 방지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비 고
제 7 장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상의 우선순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일반회계예산이 부족 한 경우 이법 제 5조에 따른 국·공립탁아소의 설립과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지원 법 제 15조에 따른 민간 탁아소에 대한 비용보조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경과 조치) (1) 이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중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새마을 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탁아 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이 법 시행일 로 부터 1년 이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중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이외 의 자기설립 운영하는 새마을 유아원이 이법에 의 한 탁아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이법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주무관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자당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지난 6월 11일 프레스 센터에서 가칭 '영,유아 보호법'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영순위원외의 영,유아보호법 제안 설명을 통해 별도의 탁아법 마련에 따른 정책방향을 밝혔다. 시안조차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이날 토론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안설명에 나타난 민자당의 탁아정책 방향

1.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가진 문제점을 (- 법 형식상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폐기할 수 있어 행정부의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시정하여 별도의 탁아법을 마련하겠다.
2. 정책 수혜 우선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및 의료부조대상자를 포함하는 저소득층으로 넓히겠다.
3. 비영리 소규모 민간 탁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4. 탁아의 일원화(관련부서의 일원화)를 피하겠다.
5. 종합적인 전달체계를 수립하겠다.

* 민자당안 제안설명의 문제점 및 경계할 대목

1. 에 대하여 ,
별도의 탁아법 마련을 통해 법형식이 가지는 효율성과 강제성을 고려,감안하여야지 법안에서 다시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모순을 범해서는 안되며 중요한 규정은 반드시 모법에 명시해야 한다.
2. 에 대하여
정책수혜대상자를 단순히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지원선이 만들어져야 하며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이 되어야 한다.
3. 에 대하여
비영리 민간 탁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모법에 명시하여야 하며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지원이어서는 안된다.
4. 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일원화라는 명목하에 행정편의주의나 관주도의 탁아정책이서는 안된다.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탁아의 내용을 담기위해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동안 도시빈민과 관계된 정보를 최대한 모으고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저희 연구소가 그 결과물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나마 빈민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하게 쓰였으면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은 매달 저희 연구소가 발간하는 '도시빈민생활정보'와 '월례토론회자료집'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빈민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과의 교류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으로 단련된 젊은 연구자들의 전문적 지식이 현장 활동가들의 실천적인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저희 연구소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가입방법 : 연구소 사무실(701-90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회 비 : 월 3,000원
(납부는 월별, 6개월분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 : 온라인 계좌 조흥은행
(329-6-131147, 예금주:신명호)